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19. 03. 26 일부 개정한
공교육정상화법, 어떻게 적용할까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2. 용어 정의

선행교육 |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

선행학습 |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 교육관련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비교

구분	선행교육	선행학습
주체	교육관련기관	학습자
정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선행교육의 의미



Q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1~2, 3~4, 5~6 학년군, 중·고등학교는 1~3학년 전체가 하나의 학년군임.
- **앞서서 편성하는 경우**란 초등학교는 학년군을, 중·고등학교는 학교급을 앞서서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것임.
- **앞서서 제공하는 경우**는 계획된(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서 학기,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앞서서 운영하는 것임.

「공교육정상화법」 관련 민원처리 흐름도(예시)

구분	처리기관	업무처리
① 출제 문제 등에 대한 이의 제기(민원발생)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처리 →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지원)청에서 판단 (☞②)
② 학교 처리 결과에 불복 시	교육(지원)청	·필요 시 장학지도·조사 및 감사 후 해당 학교에 처리 방안 통보 →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③)
③ 교육감 소속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심의위원회 안건 검토	교육(지원)청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교육(지원)청의 검토서 등을 내부 검토 후 시·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여부 결정(필요 시 장학지도·조사 및 감사 등 실시)
④ 교육감 소속 시·도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개최 및 후속조치	교육청	· 교육감 소속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개최 → 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시정, 변경 명령 ·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시 - 학교장 징계의결 요구 -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행·재정적 제재

3. 학교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의 책무



- 1)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함.
- 2)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학교 내 기구들을 활용하여 감독
- 3)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계획 등을 학교알리미 및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
- 4)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 금지



4. 학부모의 책무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의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II

학교교육과정

1. 교육과정 편성·운영
2. 평가



1.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구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선행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한 학기 내에서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에 해당 하나요?

X

A

-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이 아님.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편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학기의 학습 내용을 이번 학기에 미리 지도하면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A

- 선행교육에 해당함. 진도계획보다 실제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다음 학기 학습 할 내용을 미리 지도하는 것은 한 학기를 넘어서는 범위에서 계획이 변경된 것을 의미하므로, 변경된 진도 계획을 정보 공시에 반영해야 함.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동일 학기에 한 과목을 두 명 이상의 교사가 분담하여 지도하는 것도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X

A

- 선행교육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교사 간에 가르칠 단원을 배분할 때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할 순서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내용의 위계에 적합하게 편성되어야 함.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교육이 가능한가요?

X

A

- 그렇지 않음. 수준별 수업도 학교교육과정 및 정보 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함.

고등학교 선행교육의 해당 범위



Q

한 학기 내에서 위계가 있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나요?



A

• 개설할 수 있음. 그러나 위계에 어긋나지 않게 진도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2. 평가

평가 관련 선행교육의 판단 기준

구분		법령에서 금지하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평 가	재 학생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 (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교과 평가 (지필·수행평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선행 출제의 해당 범위

Q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는 경우에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X

A

-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의 학습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 학기에 학습한 내용을 일부의 소수 문항으로 출제할 수 있음.
- 또한 동일 교과목을 두 학기 이상 편성했을 때 첫 번째 학기 기말고사 이후의 내용을 두 번째 학기의 중간고사에 출제할 수 있음.
- 다만, 진도표와 평가 계획에 이와 같은 문항 출제 계획을 명시해야 함.



선행 출제의 해당 범위

Q

학교 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서 다음 학기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지필 또는 수행평가에 출제하면 선행교육에 해당되나요?

A

- 다음 학기 내용을 평가하는 것은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하는 선행학습 유발행위임. 이때, 교육과정 재구성과 정보 공시의 수정 없이 학교교육과정(진도계획 포함)에는 2학기에 편성된 교과 내용을 1학기에 지도하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도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임. 그러나 한 학기 안에서 지도의 순서를 바꾸거나 빠르게 지도하는 경우는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이 아님.



선행 출제의 해당 범위

Q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내 또는 교과 간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교육에 해당하나요?

X

A

- 예를 들어 과학 교과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단원을 공부하면서 다음 학기에 수학 교과에서 배울 '엇각과 동위각'의 내용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함.
- 이와 같이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과 간 또는 교과 내 교육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진도계획에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반드시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방과후학교

1.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



1.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1. 방과후학교 관련 법규 및 해설

공교육정상화법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03.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